

제30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30.(화) 10:00]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4. 3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4년 4월 30일

전문위원 장석현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38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4월 15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4월 23일

### 2.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강서구 조례 내에 사용 중인 “문화재” 관련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여 미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명칭을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개정함(안 제1조~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자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공포 / 2024. 5. 17. 시행)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3. 8. ~ 3. 28.)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사전심사: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상위법령에 따라 공통의 개정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성·효율성<sup>1)</sup>을 고려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높이는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며, “문화재” 용어의 범위 규정이 지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면 조례 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됨. 그리고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적·비능률성을 야기함

**불임1****개정 조례 정비내역**

<b>연번</b>	<b>해당부서</b>	<b>자치법규명</b>	<b>해당 조문</b>
1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교육 및 사기진작 등) ② 구청장은 유공 통·반장을 대상으로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문화재 탐방,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 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예산지원등)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문화재,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 화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의 방법으로 문화시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세무1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 세 감면 조례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 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같다) 를 면제한다.

5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4.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
6	도시디자인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물 2. 그 밖의 시설물 문화관광시설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7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8	안전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 「국가유산기본법」 [2024. 5. 17. 시행] [2023. 5. 1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 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 · 식물 · 지형 · 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 · 집단과 역사 ·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